

LGBTQ의 인권과 도서관서비스*

LGBTQ's Human Rights and Library Services

김 선 호(Seon-Ho Kim)**

< 목 차 >

I. 서론	2. 도서관인 인권교육의 강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II. 도서관계 LGBTQ 활동의 분석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1. ALA	6. NGO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2. IFLA	7. 어린이와 청소년 LGBTQ의 지원
3. 관련연구	IV. 결론
III. LGBTQ 친화적 도서관 정책의 방향	
1. LGBTQ 인권옹호와 도서관의무의 선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LGBTQ의 인권을 기저로 LGBTQ Friendly Library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DHR)와 미국도서관협회(ALA) 및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활동과 기존의 학술기사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LGBTQ 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7가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LGBTQ의 인권 향상과 도서관의 의무 선언, 2) 도서관인 인권교육의 강화,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6)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마지막으로 7) LGBTQ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원.

키워드: LGBTQ, 인권,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정책, 성취향성, 성정체성,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퀴어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s of LGBTQ Friendly Library policies based on LGBTQ's human righ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ey concepts from UN UDHR, ALA LBR, and IFLA statements up to scholarly library-articles related to LGBTQ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result suggests the 7 directions of the library services policy-making for LGBTQ in practice : 1) Recommendations on the enhancement of the LGBTQ's human rights and library obligations, 2) Enforcement of librarians' education and training on LGBTQ subject matters, 3) Convergency on the various LGBTQ's information needs and the enlargement of library collections, 4) Development of search instruments on LGBTQ, 5) Secure library moods and no-distinctive use of its accommodations, 6) Cooperation system with NGO on LGBTQ, 7) Care and support on children and young adults experienced with LGBTQ.

Keywords: LGBTQ, Human rights, Library services, Library polic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Queer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unkim@daegu.ac.kr)

•논문접수: 2015년 10월 10일 •최초심사: 2015년 11월 24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1-44,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LGBTQ¹⁾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바로 1969년 미국 뉴욕시의 게이 바에서 발생한 스톤월 폭동(Stonewall riot)²⁾이다.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LGBTQ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세력과 이들의 권리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 간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양대 세력은 LGBTQ도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하 UDHR라 함)의 1조에서 밝혔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누려야만 한다는 천부적 권리인 존엄, 자유, 평등의 권리를 지지하는 진보 좌파적 사고의 집단과 이성애의 뿌리인 종교교리와 사회윤리를 근거로 LGBTQ를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보수 우파적 사고의 집단이다. 이들 세력 간에 이러한 인권 논쟁은 UDHR의 핵심가치와 더불어 UNESCO Human Rights Research의 선언서에서 밝힌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발전과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동등한 중요성”(Samek 2005, 43)이란 수사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전통적 교리와 윤리로 무장한 기존 주류 사회의 핵심인 우파계에 맞서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LGBTQ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최근 들어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더불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이 있다. 이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LGBTQ는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일반인인 이성애자와 똑같은 평등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도처에서 이들은 법률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실재로는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 가지 대표적인 법률적 사례가 남색(sodomy)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동성애범죄법인 소도미 법(sodomy law)과 이성간의 합법적인 성관계 나이와 비교해서 동성 간의 합법적인 성관계 나이에 대해서 보다 많은 나이를 설정하고 있는 성관계 승낙 연령(age of consent)³⁾에 관한 법 등이다(HERA 2003).

이러한 차별에 맞서서 LGBTQ의 인권 보장 및 권리의 합법화 문제는 정말로 세계 여러

1) 이 글에서 LGBTQ(Gay,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Queer/Questioning)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sexual minorities)를 일컫는 대포용어로 사용한다.

2) 뉴욕에 있는 게이바인 스톤월(Stonewall)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폭동.

3) 성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적 나이.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받는다.

나라의 뜨거운 감자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이들에 대한 인적 통계를 알기 위하여 관련자료⁴⁾를 참고해 보면, 우리나라의 적극적 동성애자는 전체 남성의 약 0.07%로 나타났다으며, 이 숫치를 2010년도 인구조사에서 밝혀진 15~49세 남성인구인 1,330만 명에 적용하면, 당시 남성 동성애자는 약 13,000 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여성 동성애자는 전체 여성의 약 0.03% 이므로, 이 숫치를 2010년도 인구조사에서 밝힌 15~49세 여성인구가 1,274만 명에 적용시키면, 여성 동성애자는 대략 4,000 여명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 분석을 근거로 2010년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의 총 수는 대략 17,000 명이상 일 것이며⁵⁾, 이 숫자는 최근에 더욱 늘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LGBTQ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환경에 대해 2014년 LGBTQ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동성애 활동과 관련해서 인접국인 중국은 1997년부터, 일본은 1880년부터 합법화 되었으나, 한국은 외형적으로 동성애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으며, 성취향성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없지만, 징병제도 때문에 LGBTQ의 군복무가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성전환 역시 허용하고 있는 데 (Itaborahy 2014), 이것은 한국 대법원의 2006. 6. 22. 자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호적법에서 정하는 정정의 방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에 기재된 성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외관상으로는 동성애활동에 대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3년 4월 직접 한국을 언급하면서 “한국 내의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우려된다”⁶⁾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는 동성 간의 성행위 및 결혼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 커플에 의한 양자입양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LGBTQ의 시민적 그리고 법률적 권리가 혼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들을 인정하는 추세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의 도서관계에서도 LGBTQ의 인권과 도서관 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 논쟁이 오래전부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중남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ALA를 중심으로 LGBTQ의 도서관 서비스의 정당성 또는 당위성(Thompson 2012)과 더불어 이들의 주요 관심주제인 커밍아웃(coming out), 건강, 가족사, 독서,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장서의 개발 조건, 주제명 표목, LGBTQ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 도서관인 교육의 필요성 등등 다양한 연구주제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으나(wikipedia 2015), 아직 우리나라의 도서관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거

4) 2011년도의 한국성과학연구소의 전국적인 조사

5)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 / 국민연합, <<http://www.cfms.kr/board/351>> [인용 2015. 8. 3].

6) 뉴스앤조이. 2015. 6. 21. “동성애, 개신교인이 많이 하는 질문과 8가지 답변”.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55>> [인용 2015. 12. 7].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소수이지만 LGBTQ인 개인뿐만 아니라 커플이 살고 있으므로, 이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호불호를 떠나, 도서관은 UDHR에서 선언했듯이, 모든 구성원의 존엄권, 평등권, 안전권과 더불어 정보접근권을 보호하여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위반하지 않도록, 그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법률적 압력에 맞서야 하며, 예외적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직의 중립성과 상관없이 당연히 떳떳하게 모든 사회소수자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도서관인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이며 권리인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인권중심의 LGBTQ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철학적 당위성과 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이 글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은 원-자료의 내용에 내재된 수사적 의미를 분석하여, 그것의 주요한 구조나 경험을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질적 데이터분석의 귀납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Thomas 2013). 그리고 이 글에서는 UDHR의 사상을 기초로 한 ALA와 IFLA의 LGBTQ 관련 자료와 주로 미주지역의 도서관계에서 출판된 학술기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진 국내 도서관계의 LGBTQ와 관련된 활동이나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글의 연구 방법은 자료 속의 텍스트 개념분석이 주로 저자와 같은 코더(coder)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이것이 연구결과에 직간접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방향을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II. 도서관계 LGBTQ 활동의 분석

LGBTQ의 도서관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ALA가 주도해 왔으며, 최근 들어 IFLA에서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LGBTQ에 대한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ALA와 IFLA의 활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해외 도서관계의 학술기사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1. ALA

ALA는 누구나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LGBTQ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1998년에 내부조직으로 GLBTRT(The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Round Table)를 구성하면서, 이 원탁회의의 임무를 “주로 LGBTQ 전문도서관들의 정보요구에 관한, 그리고 LGBTQ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접근에 관련된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ALA 2015a)이라고 밝혔다. 이 원탁회의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전 연령층의 LGBTQ가 특별한 관심을 갖는 도서관 자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질적 또는 양적으로 개선되도록 촉구하고, 둘째 LGBTQ가 생산하는, 또는 LGBTQ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모든 도서관 고객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도서관인과 도서관 고객 등에게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넷째 도서관 등에서 LGBTQ 직원에 대한 직업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다섯째 LGBTQ의 문화와 사회에 관한 삶, 행동, 공헌을 폄하하는 지속적인 표현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류표, 주제명표목, 색인 등의 개정을 지지하며, 그 밖에도 LGBTQ 도서관인을 대신하는 ALA 활동의 지지, 도서관계에서의 LGBTQ 평등권의 보장, ALA의 도서관권리선언서(ALA Library Bill of Rights, 이하 LBR이라 함)과 윤리강령(Code of Ethics)의 계승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GLBTRT에서는 LGBTQ에 관한 도서관 자료에 명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1988년판인 ‘the International thesaurus of gay and lesbian index terms’를 개정하여, 2007년에는 ‘GLBT Controlled Vocabularies and Classification Schemes’를 출판하였다(Johnson 2007).

이외에도 ALA에서는 LGBTQ와 관련된 도서관 자료의 위협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ALA 2005). 이 결의문에서도, “선출직 공무원 중 일부가 공공자금을 지원 받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성취향성과 관련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려는 상황에서, 미국 수정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양한 표현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도서관에서 이러한 표현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도서관은 봉사대상 커뮤니티의 모든 고객에게 봉사해야 하며, 소장자료를 당파적이거나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제거하지 않아야 하고⁷⁾, 모든 또는 특정 주제분야의 의문, 원인, 또는 방향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디어나 사고와 관련된 모든 표현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지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⁸⁾, 끝으로 성, 성정체성,

7) ALA, Policy 53.1, “Library Bill of Rights”.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cited 2015. 12. 7].

8) ALA, Policy 53.1.11, “Diversity in Collection Development” <<http://www.ala.org/Template.cfm?Section>

성취향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저항할 의무를 도서관과 도서관인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LGBTQ에 대한 이러한 ALA의 관심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2008년에 개정된 LGBTQ에 관한 정책 선언서의 전문에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미 도서관들은 헌법과 수정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따라, LBR의 6개 조항 속에 내포되어 있는 LGBTQ와 관련된 의미를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여야 한다: 도서관과 도서관인은 성, 성적체성, 성취향성을 포함하여 그 어떤 특정한 주제라도, 자료를 조직적으로 제외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저항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면서(ALA 2008), 각 조항별로 LGBTQ와의 관련성을 적용시켰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장서구성의 차별금지 조항인 1조에 근거하여, LGBTQ 출판사, LGBTQ 저자에 의해 생산된 책, 자료, 그리고 포맷이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LGBTQ의 삶을 다루는 자료들은 LBR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도서관인은 공인된 자료선택정책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성, 성적체성, 성취향성과 상관없이 자료를 선택할 책임이 있고, 또한 도서관자료제공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는 2조를 토대로 성, 성적체성, 성취향성을 나타내는 도서관 서비스, 자료, 프로그램에 관한 장서를 구입하여야 하며, 공인된 자료선택정책에 근거하지 않고 LGBTQ의 삶을 다룬 자료를 배척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는 LBR의 위반이며 검열이라고 ALA에서는 거듭 단언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고객의 차별금지 조항인 5조에 따라, 성, 성적체성, 성취향성과 상관없이 도서관의 서비스, 자료, 프로그램은 그 도서관이 봉사하는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성교육 자료를 모든 젊은이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시설사용의 평등권을 다루고 있는 6조를 근거로, 도서관의 모든 공간이나 시설은 성, 성적체성, 성취향성과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그룹이나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LGBTQ에 대한 거듭된 자신의 사상적 그리고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LGBTQ에 대한 강력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⁹⁾,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LBR에 따라 게이와 퀴어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사고에 관한 정보를 배포할 의무¹⁰⁾뿐만 아니라, 성취향성에 근거한 도서관 서비스에서 개인과 집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차별에 저항할 책임¹¹⁾을, 끝으로 도서관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전통적이

=interpretations&Template=/Content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8530> [cited 2015. 12. 7].

9) ALA, Policy 53.1.15, “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Regardless of Sex,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accesslibrary>> [cited 2015. 12. 7].

10) ALA, Policy 54.17, “Gay Rights”.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statementspols/ifresolutions/threats>> [cited 2015. 12. 7].

고 개방적인 광장이므로, 도서관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이것은 LBR의 기본적 신념을 침해하는 것¹²⁾이라는 것을 ALA는 자신들의 정책에 명문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ALA에서는 지난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약 30년 동안 도서관에 동성애 관련 자료를 소장해야 한다는 미국인의 수가 55%에서 73%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비율의 증가가 성취향성과 성적체성을 옹호하는 도서관 자료, 행사, 전시회에 대한 논쟁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도서관인이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자료나 서비스의 제공을 저지하려고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현재에도 이 이슈는 ALA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ALA 2015b).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ALA의 활동과 주장이외에도 이 기관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LGBTQ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으며, 그 중에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연대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Tiki-Toki 2007):

1971년에 ALA에서는 처음으로 'GAY BOOK AWARD'를 시상하였고, 또한 같은 해에 열린 총회 행사장의 중앙전시홀에 최초로 'Hug A Homosexual'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1986년에 'GAY BOOK AWARD'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였으며, 1992년에는 'San Francisco Pride Parade'에 참가하여 이 행진사진을 'American Libraries'의 표지에 실었으며, 2007년에는 'Rainbow Project'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술한 LGBTQ 도서에 대하여 새로운 상¹³⁾을 시상하였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계속해서, 이 기관의 OIF(the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에서 특히 자료의 주제가 성취향성, 반-가족성, 언어폭력등과 관련되어 학교와 도서관의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대중에게 알릴 목적으로, 학교와 도서관에서 퇴출 강요받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10권의 도서목록을 발표하였다¹⁴⁾.

결론적으로 ALA의 활동과 주장의 내용분석을 근거로, ALA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서관과 도서관인에게 LGBTQ의 인권보호와 차별 없고 평등한 정보접근의 자유,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맞서서 도서관계의 저항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LA에서는 비록 합법적으로 또는 초법률적으로 LGBTQ와 관련된 도서관 서비스, 자료, 프로그램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도서관이나 도서관인은 저항

11) ALA Policy 60.2, "Combating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http://www.ala.org/aboutalagovernance/policymanual/updatedpolicymanual/section2/diversity#B.3.3>> [cited 2015. 12. 7].

12) ALA Policy 53.1.6, "Restricted Access to Library Materials". <<http://www.ala.org/Template.cfm?Section=interpretations&Template=/Content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31868>> [cited 2015. 12. 7].

13) Stonewall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Award

14) Top ten frequently challenged books lists of the 21st century. <<http://www.ala.org/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top10>> [cited 2015. 9. 10].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로 도서관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모든 아이디어와 사과의 도서관 서비스, 자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직업적 책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선언서와 결의문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GBTQ에 관한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을 차단하려는 어떠한 법률적 또는 행정적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하여 LGBTQ에 관심 있는 국제기구 및 사회단체와 더불어 공동으로 대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ALA에서는 LGBTQ 자료의 시소러스와 통제어휘집을 제작하여 이들 자료의 검색성과 접근성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 성적체성, 성취향성을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서관장서의 포괄적 구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모든 회원 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모두를 대신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IFLA

IFLA는 이미 오래전에 장애인, 노인, 병원환자, 치매인, 난독인, 수형자 등등 기존의 다양한 사회소수자를 위한 성명서와 결의문 등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약자를 위한 자신들의 확고한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LGBTQ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거가 바로 2013년에 LGBTQ SIG(Special Interest Group)를 구성하여, 도서관과 LGBTQ에 대한 모든 이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SIG의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접근에 대한 직업적 책임의 일부로서, 도서관인은 LGBTQ를 포함하여 모든 고객의 정보요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임무에는 “도서관이 전문성, 방문봉사, 프라이버시, 프로그래밍, 업무 효율성 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자료에는 LGBTQ 관련 문헌, 학술저서, 청소년 및 가족용 자료, 그리고 동성애와 성취향성에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IFLA 2015). 또한 자신들의 주요 봉사대상은 LGBTQ 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인이며, 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토론회의 개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이 SIG에서는 2014년 제 80회 IFLA 총회 기간에, 한 세션을 맡아 LGBTQ 논문발표회를 개최하였다(IFLA 2014).

비록 IFLA의 출발은 ALA에 비해 늦었지만, 하위조직인 LGBTQ SIG를 통하여, LGBTQ에 대한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공표하면서, 전 세계의 회원도서관에게 이러한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을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

LGBTQ에 대한 국내 도서관계의 환경이 최근에 미미하게나마 변하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미국 중심의 북미지역 도서관계에서는 오래전부터 UN의 UDHR의 2조(비차별), 3조(안전할 권리), 그리고 특히, 19조(자유로운 정보접근 권리)와 26조(교육받을 권리)에 비중을 두고 LGBTQ와 도서관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기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1990대 년에서부터 최근까지 도서관계에서 출판된 LGBTQ 학술기사를 대상으로, 그것의 연구내용을 초록이나 요약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임의로 4가지 주제로 범주화 - LGBTQ 인권과 서비스 당위성, 정보요구와 장서구성, 정보탐색도구,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 한 다음에, 각 사의 본 내용을 귀납적으로 분석한다.

가. LGBTQ 인권과 도서관서비스 당위성

LGBTQ의 인권을 기저로 도서관 서비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면서, 핵심적인 근거로 UN UDHR에서 선언한 보편적 인권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LGBTQ의 인권과 도서관의 책임을 주장한 로젠제이그(Rosenzweig 2000)는 “진보 도서관인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회에서 생산되거나 생산될 모든 문화자원에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전문인이므로, 도서관 고객의 나이, 신체조건, 성취향성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맞서서, 행복하고, 정의롭고, 비폭력적이고, 건강한 세상이 되도록 인류의 모든 유산을 의도적으로 수집, 보존,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오늘날 주류 도서관인의 철학적 사상이 비록 가치중립적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인은 표현의 자유, 공공복지의 권리뿐만 아니라 동성애 및 성소수자에 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보도서관인으로 잘 알려진 새벡(Samek 2005)은 정보접근자유와 검열에 초점을 맞추어, 비평도서관 운동이란 “자유, 평등,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관용, 존경, 단결, 개인의 존엄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근거로 발전해야 하며, 설득과 일치된 의견수립”이 기본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으로 장애인,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호감도가 가장 떨어지는 정치적 급진주의자 등과 같은 사회소수자나 주변인들은 주류 사회의 문화적 그리고 시민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다른 문화일꾼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인도 고의적이든 아니든 사회소수자와 관련해서 제외시켰거나 부정적인 임무 및 정책을 바로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자는 LCSH, UDC, DDC에서 사회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성, 인종, 사상, 경제상태, 사회계급, 장애, 이민, 성취향성, 중

교, 언어에 근거한 차별이 도서관에서 계속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인은 사회적 변두리가 아니라 삶의 최전선이나 그 중심에 서서 “Vancouver gay bookstore Little Sisters Book and Art Emporium¹⁵⁾” 사건과 같은 정부기관의 검열에 맞서 싸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메라와 그레이(Mehra and Gray, 2014)는 미국 테네시 주가 악명 높은 2011년 그리고 2013년의 ‘Don’t Say Gay’ 법안¹⁶⁾의 입법 시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해한 지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입법자들이 이미 실패한 입법 내용인 “자연스럽지 못한 성행위에 대하여 초중등학교 선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보수적이고, 반-동성애적이며 성경중심적인 고장의 상징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테네시 주의 학교, 공공, 학술 도서관들이 LGBTQ 정보의 수집과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웹 환경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테네시 주의 전체 도서관 중에서 약 3% 정도만이 자신들의 웹 사이트에서 LGBTQ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마저도 매우 제한적이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LGBTQ 주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많은 도서관들이 두려움과 더불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주 의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도 억압적인 LGBTQ 법률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주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와 대학의 도서관들을 상대로 예산삭감과 같은 ‘약자 괴롭히기 전략(bullying strategies)’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웹 사이트에 LGBTQ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 결론에서 저자들은 정치인들의 이러한 괴롭힘에 맞서서, 도서관은 패권적이고, 편견적이며, 증오에 찬 압제자에 맞서서 LGBTQ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어떠한 강압에도 저항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가상의 공간인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LGBTQ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포괄적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LibGuides¹⁷⁾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적합한 탐색어휘를 사용하여 LGBTQ 정보를 올바르게 검색할 수 있는 탐색엔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LGBTQ의 도서관 서비스와 비정부기구(NGO)의 협력관계를 연구한 실바 알렌테오(Silva Alentejo 2014)는 2011년에 UN이 성취향성을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폭력을 금지하는 ‘zero tolerance¹⁸⁾’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Brazil without Homophobia’

15) 2000년에 캐나다 대법원에서, ‘Little Sisters Book and Art Emporium 서점의 동성애 자료 수입에 대한 조사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외설자료배척법이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16) ‘Don’t Say Gay’ 법의 주요내용: “입학 전에서부터 8학년까지,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식과 모순되는 수업, 교과 자료, 또는 기타 정보자원들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17) 도서관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웹 출판 플랫폼. <<http://springshare.com/libguides/>> [인용 2015. 12. 7].

18) 불관용(Zero Tolerance) 정책: 학교를 안전한 배움의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및 대학교로부터 무기와 마약을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http://education-law.lawyers.com/school-law/whats-a-zero-tolerance-policy.html>> [인용 2015. 12. 7].

라는 포용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정책에 따라 NGO인 LGBTQ 기구들의 활동지역에 속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그것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저자는 NGO 기구들이 공공도서관에 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서개발에 동성애자를 참여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LGBTQ임을 분명하게 공개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추가적으로 저자는 공동도서관이 참여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활동으로는 “LGBTQ의 문화적 포용성에 대한 토론회에서부터 LGBTQ의 서지 접근 강좌, 교육 미팅 지원, 공공행사 지원, LGBTQ를 목표로 한 장서의 이용방법, NGO 및 학교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교육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LGBTQ 관련 기구의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저자는 결론에서 대부분의 LGBTQ 관련 NGO가 공공도서관에서 반-동성애자에 맞서는 문화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인과의 밀접한 유대가 필요하며, 공공도서관 역시 동일한 견해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도큐멘테이션 센터도 자신들의 도서관 장서를 보강하여 교육, 문화, 건강, 시민권 그리고 사회적 포용 분야에 대한 LGBTQ 고객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랑(Lang 2009)은 캐나다 도서관 협회가 2008년 2월에 LGBTQ 개인과 그룹의 다양성과 내포성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힌, ‘The CLA Statement of Diversity and Inclusion’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the CLA 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1974)’ 과 ‘the CLA Code of Ethics(1976)’을 참조하였고, ‘the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7)’ 와 ‘the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 (2000)’와 같은 기존의 선언서를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선언서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실무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결론에서 저자는 이 선언서의 요구에 따라, LGBTQ 개인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의 실질적인 도서관 전략, 정책, 입장, 가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성취향성의 다양성과 인권뿐만 모든 캐나다인의 인권과 사회정의의 위한 도서관인의 교육, LGBTQ 주제에서 현재 널리 쓰이는 용어나 언어에 대한 도서관인의 이해, 그리고 복수주의 사회로서 캐나다의 가치 인정,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그리고 도서관 고객에게 특정한 가치, 관습 또는 믿음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세력의 시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보장을 제안하였다.

나. 정보요구와 장서구성

LGBTQ의 성숙단계별 정보요구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도서관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위트(Witt 1993)는 북 캘리포니아 지역의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요구와 이들이 살아가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저자는 동성애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의 정보요구조사를 통하여, 레즈비언은 커밍아웃의 초기단계 동안 자신이 필

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제도 사실적이고 비소설적인 정보나 자료에서 출발하여 차츰 오락적이고 소설적인 자료로 나이가 들에 따라 단계별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많은 레즈비언들이 도서관에 관련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록 도서관을 이용하는 레즈비언조차도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인의 반-동성애적 성향에 놀라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험은 학술도서관보다는 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레즈비언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도서관인의 반-동성애적 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인을 대상으로 LGBTQ 관련 교육을 제안하였다.

위트와 달리, 게이와 레즈비언의 정보요구와 장서확대를 통한 사회인식변화의 책임이 도서관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조이스와 슈래더(Joyce & Schrader 1997)는 캐나다 에드먼튼 지역의 남성 게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저자들은 도서관이 이들에게는 커밍아웃과 그에 따른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자주 찾는 정보원이며, 이들의 주요 대출자료는 대부분이 음악이고, 그 다음으로 비소설과 소설 순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저자들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이 남자 자료의 대부분이 이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게이 도서 및 잡지의 확대를 통해, 그리고 동성애관련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에 도서관이나 도서관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LGBTQ의 정보요구와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에 대하여, 모리스와 로베르토(Morris & Roberto 2014)는 LGBTQ 건강 전문가의 특수한 정보요구와 이들의 도서관인 이용을 조사한 다음, LGBTQ 고객의 관심은 일반인인 도서관인이 자신들의 정보요구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신들의 정보요구가 LGBTQ인 도서관인에 의해 이상적으로 만족되지만, 만일 그 같은 도서관인을 이용할 수 없다면 LGBTQ 건강정보분야에 근무하는 도서관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자는 소셜 네트워킹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LGBTQ가 도서관인을 만나는 데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널리 인식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도서관은 LGBTQ에게 환영받고 접근하기 쉬운 공간이 되어야 하며, 도서관인 또한 LGBTQ와 관련해서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도 LGBTQ의 눈높이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게이와 레즈비언 주제의 장서구성을 조사한 크릴만과 해리스(Creelman & Harris 1990)의 연구는 반-이성애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포괄적 견해를 제공한 첫 번째 연구이며,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대다수의 레즈비언이 도서관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이 도서관장서가 자신들에게는 부정적이고, 게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다음, 도서관은 레즈비언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의 긍정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으면서, 도서관의 게이 위주 장서구성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노먼(Norman 1999)은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LGBTQ를 대상으로, 이들의 도서관이용 이유를 조사하여, 가장 인기 있는 자료는 소설이나 오락용 자료라는 것,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LGBTQ 관련 자료가 고가자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저자는 도서관장서에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로스바우어(Rothbauer 2004)는 18-23세인 LGBTQ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독서 습관을 조사하여, 이들이 젊은 LGBTQ를 다룬 소설의 읽기가 자신들의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들이 즐겨 찾는 소설의 내용이 LGBTQ 정체성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반-동성애적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저자는 공공도서관은 인터넷 그리고 서점과 더불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접근점 중의 하나이며, 비록 이들이 동성애 소설을 탐색하는 데 안전하게 익명으로도 가능한 온라인 도서관 목록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자료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LGBTQ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다 가시성이 좋은 장소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된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최신성 또한 향상시키길 것을 제안하였다.

베이리거와 잭슨(Beiriger & Jackson 2007)은 폴란드의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서관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건강정보를 마지막으로 찾는 장소들 중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LGBTQ와 관련된 도서관장서가 다양하지도 않고 포괄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저자들은 그렇더라도 도서관인이 이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성전환자 커뮤니티에 더 많은 방문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성소수자에게 원격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정보탐색도구

LGBTQ 자료의 주제 및 정보 접근과 관련해서, 존슨(Johnson 2007)은 석사학위논문에서, LGBTQ의 주제접근 어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밝히고자 3개의 LGBTQ 시소러스에 기술되어 있는 특별한 주제를 대상으로 LCSH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저자는 LGBTQ

의 표현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대안적 어휘집들이 LCSH의 성공으로 희생양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기관에 생산된 관련 서지 및 전거 레코드가 LC 데이터베이스로 수렴됨으로써, 나머지 어휘집의 용어가 점점 더 LCSH와 같은 공유형 편목기준에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에서 저자는 비록 LCSH가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간다고 하더라도, 기술자원이란 세계(universe of describable resources)는 계속해서 그것의 범위를 증가하여 확대되므로, 특히 사회정체성에 관련된 사람인 LGBTQ에 대한 용어의 변화를 기존의 통제어휘만으로는 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OCLC와 같은 기관들이 소셜 태깅(social tagging)과 시멘틱 태깅(Semantic tagging) 기술을 도서관 목록에 접목시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에서 차베스 귀마레즈(Chaves Guimaraes, et al 2014) 등은 다양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회적 실체를 지칭하는 신조어를 기존의 서지세계(bibliographic universe)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한 가지 예가 기존에 동성에 커플의 동거를 의미하는 용어인 ‘Homoaffectivity’가 지금은 더 인기 있는 용어인 ‘Gay Marriage’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신조어가 반영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화적 유대감과 정당성의 내포적 의미에 대해 비록 도서관인이 전통적 윤리의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이 신조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인성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차별 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서관 봉사의 평등성을 주장한 저자들은 LGBTQ의 이슈와 관련된 정보검색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ay marriage’와 ‘homoaffective union’이란 용어로 언론 및 과학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서명과 부서명을 대상으로 2003-2012년 동안 그것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주요 색인집과 비교하여, 이 두 용어에 대한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의미가 본 서명에서보다는 부서명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색인어휘마저도 동성애 전문성의 수준이 매우 낮아서, 이 용어들의 검색결과가 평범하고도 부정확한 용어로 연결된다는 것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도서관에서 LGBTQ 주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색인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보다 엄격한 도덕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LGBTQ 고객은 정보 탐색 시에 이중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LGBTQ에 대한 LC의 주제명 표목¹⁹⁾과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Archives Classification System of David Moore(1985)’에 기초하여 소설과 전기를 독립된 범주로 지정한 개정된 분류표²⁰⁾가 만들어져서, 일반적인 도서분류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19) Library of Congress. 2000. LC Queer Subject Heading. <<http://www.dartmouth.edu/~jcd/qsubj.html>> [cited 2015. 12. 7].

20) Michel, D. & Moore, D. 1990. Michel/Moore Classification Scheme for Books in Lesbian/Gay Collections. <<http://www.lambdaarchives.us/Library/index.htm>> [cited 2015. 12. 7].

LGBTQ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정보탐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LGBTQ 주제의 탐색과 관련된 새롭고 정확한 도구를 만드는 것은 이들이 사회로부터 분명하게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탐색도구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이제 이들이 결코 비-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의 방증이 되고 있다.

라. 어린이와 청소년

어린이와 청소년 LGBTQ에 관심을 갖고 하워드(Howard 2005)는 1989-2002년 사이에 출판된 게이 및 레즈비언 주제의 어린이용 그림책과 일반도서인 대조군을 대상으로, 캐나다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이들 자료의 선정 기준과 이용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먼저 그는 자료의 선정도구로 사용되는 비평지의 수가 LGBTQ의 자료에서는 건당 6.4개로 나타났으나, 이 숫자는 일반도서의 평균수 9.14개보다 낮았는데, 그 이유가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기간행물의 서평기사에 나타난 편견이나 출판사의 부적절한 홍보가 이것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저자는 게이 관련 그림책의 많은 서평들이 어린이/청소년 담당 도서관인이 자료선택도구로 잘 사용하지 않는 특수정보원 주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추측과 가정을 통하여 도서관 장서에서 어린이용 LGBTQ의 자료가 일반적인 자료에 비하여 확연하게 나타나는 불균형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저자는 주장하였다.

또한 자료열람과 관련해서, 저자는 일반 자료와 LGBTQ 자료의 열람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의 원인으로 자료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편견과 검열이라 가정하면서, 비록 도서관에서 성인과 청소년용으로 LGBTQ 자료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서점이나 도서관 상호대차를 통하여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못하므로 어린이용 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관심과 역할을 특별하게 강조하였다.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채프만(Chapman 2014)은 영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의 장서 구성과 관련된 도서관인의 태도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LGBTQ 관련 소설의 제공여부와 이러한 자료의 제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LGBTQ 소설의 제공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도서관인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대다수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 공개적인 이유가 과거에는 이런 주제의 자료 제공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어떤 자료가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고, 또한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도서관인은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수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제공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그림책, 성전환주제도서, 대
활자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책뿐만 아니라, 비주류에 속하는 저자나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책을 수집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용 LGBTQ 소설을 확대시켜야 하
며, 장서정책에 어린이와 청소년용 LGBTQ 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LGBTQ 전문
서점이나 도서관과 같은 전문 공급자와도 협력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제의 자료
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전시회, 토론회, 또는 도서목록
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LGBTQ 청소년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강조한 연구에서, 소모르예(Somorjai 2014)는
청소년기가 비록 개인적으로 점점 더 성취향성이 솔직해지고 확고해지는 시기라 하더라도,
많은 청소년에게 이 시기는 힘든 시기이며, 이성애-지향적인 주류 그룹에 끼지 못하는 반-
이성애적 청소년은 자신의 동료, 선후배, 동아리, 학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 전체로부터 종종 위협과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자기학대, 자살생각, 자살시도, 그리고
자살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 이성애자인 친구보다 더 자주 이루어지고, 그 비율이 모든
LGBTQ 청소년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자는 결론에서 도서관은 자신의
웹사이트와 같은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이들이 자기결정 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
며, 특히 공공 및 어린이 도서관인은 이런 청소년이 삶을 유지하여 긍정적인 자아상과 멋진
자신의 삶을 꿈꾸는 건강한 청년이 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윈클스타인(Winkelstein 2014)도 LGBTQ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10)’의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에서 12-24세의 노숙자
청소년 중에서 약 20-40%가 LGBTQ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숫자는 전체 청소년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숫자는 매우 놀라운 것이며, 이것은 심각하게 불균형
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현상 즉, 젊은 LGBTQ의 노숙자의 증가
추세는 공공도서관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은 이러한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의 고충 - 젊음, 노숙자, 성적체성 - 을 이해하여,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
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자는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식자능력이 있고, 컴퓨터
를 사용할 줄 알며, 가정이 있고, 장애가 없는 이성애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자인 LGBTQ 청소년과 같은 성소수자에게는 이러한
도서관 환경이 충격적이고 압제적인 환경이 되어 LGBTQ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
열등감, 자살의 관념화, 우울증을 유발시키게 되므로, 도서관의 이러한 분위기가 빨리 바뀌어
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Ⅲ. LGBTQ 친화적 도서관 정책의 방향

이상과 같이, UN OHCHR(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중심으로 여러 국제적 인권기구들 뿐만 아니라, ALA에서도 LGBTQ에 대한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을 개선시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많은 도서관인들이 LGBTQ의 도서관 서비스를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외 도서관계의 조직적인 활동과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도서관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에서 살펴보고 분석한 ALA 및 IFLA의 활동과 해외학자들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이 LGBTQ Friendly Library가 되기 위한 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1. LGBTQ 인권옹호와 도서관의무의 선언

비록 우리나라의 LGBTQ가 사회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이들에게도 일반고객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문서로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ALA가 UN의 UDHR의 2조, 3조, 그리고 특히 19조와 26조, 그리고 자신의 LBR의 1조, 5조 6조에 대한 확대해석을 통하여, LGBTQ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모든 회원도서관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과 IFLA LGBTQ SIG의 전문에서 밝힌 LGBTQ를 포함하여 모든 도서관 고객의 정보요구를 지원할 책임이 도서관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우리나라 도서관 협회에서도 기존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개정을 통해, 모든 회원 도서관은 사회기관으로서 도서관인의 LGBTQ 인권에 대한 사고전환과 책임의식의 증진을 권고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 도서관 고객은 누구나 자신의 성, 성적체성, 성취향성을 이유로, 도서관의 정책, 인사, 자료선택, 장서구성,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및 환경 등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과 숭고한 선의에 의한 검열일지라도 저항할 수 있는 도서관인의 권리를 반드시 명문화시켜야 한다.

2. 도서관인 인권교육의 강화

모든 도서관인은 어떠한 창작물이라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수호자이어야 한다. 비록 도서관인 스스로 반-동성애 기질을 갖고 있더라

도, 특히 UDHR의 19조의 권리와 ALA의 LBR의 신념에 따라 LGBTQ에 대한 정보접근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반고객과 똑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에서 LGBTQ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인권의 철학 및 사상, 국제 도서관 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관 정책과 프로그램을 LGBTQ의 세대별 눈높이에 맞추는 방법, 다양하고 진화하는 성, 성취향성, 성정체성의 개념과 정의뿐만 아니라 서로 얽히고설킨 LGBTQ 전문용어 간의 어의적 네트워크의 이해,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책임과 운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ALA LBR의 차별금지조항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도서관은 저자 및 제작자의 성, 성정체성, 성취향성과 상관없이, 소장자료가 당파적이거나 특정 교리나 신념에 어긋난다는 핑계로 자료선택 시에 제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공인된 자료선택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LGBTQ 전문출판사나 LGBTQ 저자에 의해 생산된 책과 기타 자료를 선택하여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자료를 배척하거나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검열이므로 저항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IFLA에서 주장했듯이, LGBTQ 성인과 관련된 모든 책, 학술저서, 오디오, 비디오, 사운드, CD, 멀티미디어, 영화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그리고 선생용 자료 등 또한 모두 다 도서관은 소장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도서관은 LGBTQ의 중요한 정보원이므로,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인 음악, 비소설, 소설, 오락 및 레저, 교육, 문화, 건강, 시민권, 그리고 사회적 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히 고가의 LGBTQ의 자료의 수집에는 LGBTQ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LGBTQ의 자료들 중 어떤 것이 일반고객용의 것과 중복되더라도,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자료 역시 구입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의 최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LGBTQ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지를 자주 이용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ALA에서는 LGBTQ에 관한 도서관 자료에 명백하게 그리고 품위있게 물리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색인어휘집과 통제어휘집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미의회도서관에서도 역시 키워용 주제명 표목표를 이미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도 IFLA처럼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SIG를 만들어서, 우리사회의 성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소러스 또는 통제어휘집을 제작하여, LGBTQ 뿐만 아니라 일반고

객도 원하는 자료의 주제 접근 및 검색의 확실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또한 누구라도 이 도구를 사용하면, 통일된 정보접근절차를 거쳐 동일한 탐색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SIG의 구성이 어렵다면, 소셜 태깅(social tagging)과 시멘틱 태깅(Semantic tagging) 기술을 도입하여 KDC나 DDC의 기존 표목에 있는 LGBTQ 표목의 범주를 확대시켜야 한다.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LGBTQ가 도서관에 가장 원하는 요구 중의 하나가 도서관의 안전성이므로, 도서관은 LGBTQ에게 환영받고 접근하기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도서관인을 만날 때에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도서관인과의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접촉에 두려움을 느끼는 LGBTQ라면, 도서관의 방문 서비스나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안전하고 독립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LGBTQ 자료를 서가에 배치하는데 있어서, LGBTQ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장소를 위주로 배치하여야 하며, ‘Hate Free Zone poster’나 ‘Rainbow sticker’를 이용하여 이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도서관의 분위기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LGBTQ가 도서관의 모든 공간이나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성, 성정체성, 성취향성을 근거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독립된 위생시설 또는 피난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6.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도서관은 LGBTQ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커밍아웃 관련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이나 동성애 협회와 같은 NGO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서관은 LGBTQ의 사회운동 추세를 인지하고,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또한 LGBTQ 관련 서지 및 장서 이용교육 프로그램, 전시 행사, 그리고 토론회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LGBTQ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원

해외 도서관의 환경과 달리, 우리나라 도서관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LGBTQ는 아직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임이 분명하다. 성인과 달리, 이들에 대한 통계조차 추정할 수 없다. 그렇지

만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는 말할 없다. 우리나라 도서관도 이들 어린이 또는 청소년 LGBTQ에 대하여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LGBTQ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토대로 멋진 미래의 삶을 꿈꾸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 자료의 선택과 장서의 구성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의 선택도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주류사회의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편견과 검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관 협회에서도 ALA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LGBTQ 자료에 대한 시상식과 목록 발표를 통하여 이러한 자료에 햇빛이 들게 하여야 하며, 도서관도 자신들의 자료선택 및 장서구성 정책에 분명하게 이러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료의 홍보를 위하여, LGBTQ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선생, 사회시설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서목록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관련 전시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LGBTQ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담할 전문도서관인을 배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IV. 결 론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1990년에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 '동성애 관련 심리적 질환'의 질병이름을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서 삭제토록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LGBTQ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해외 도서관계에서 다양한 정책과 학술기사가 발표됨으로써, 1999년 무지개 도서관(RAINBOW LIBRARY)²¹⁾ 그리고 2012년 스웨덴 우메아 시의 무지개 도서관²²⁾과 같은 LGBTQ 전문도서관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의 변화와 달리, 아직까지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LGBTQ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이 어디에서도 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도 기존의 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에서 벗어나 사회기관으로서 사회소수자이면서 약자인 LGBTQ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의 정보요구와 접근을 떳떳하고도 공개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서관의 일반고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시민이고, 납세자이며, 비록 어린이나 청소년일지라도

21) Rainbow Library. <<http://www.okeq.org/rainbow-library.html>> [cited 2015. 12. 7].

22) The Rainbow Library at Umeå City Library. <<http://library.ifla.org/1019/>> [cited 2015. 12. 7].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중요한 고객집단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LGBTQ Friendly Library를 마련하는 데는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상반된 압력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도서관인은 도서관직의 중립성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확고히 하여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모두의 도전이다.

참고문헌

- ALA. 2005. "Resolution on Threats to Library Materials Related to Sex,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statementspols/ifresolutions/threats>> [cited 2015. 9. 10].
- ALA. 2008. "Policy Statements: 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Regardless of Sex,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or Sexual Orientation: An Interpretation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accesslibrary>> [cited 2015. 9. 10].
- ALA. 2015a. "GLBTRT Bylaws & Mission Statement." <<http://www.ala.org/glbtrt/about/bylaws>> [cited 2015. 9. 10].
- ALA. 2015b. "Out in the Library: Materials, Displays and Services for the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iftoolkits/glbtoolkit/glbtoolkit>> [cited 2015. 9. 10].
- Beiriger, A. & Rose M.J. 2007. "An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Needs of Transgender Communities in Portland, Oregon." *Public Library Quarterly*, 26(1): 45-54.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3004976>> [cited 2015. 7. 20].
- Caves Guimaraes, J. A. et al. 2014. "Gay Marriage and Homoaffective Union: a terminological analysis of the social values of libraries as a source for an ethical subject representation and dissemination in Brazil." <<http://library.ifla.org/id/eprint/1012>> [cited 2015. 7. 20].
- Chapman, E.L. 2014. "I've never thought about it": librarians' attitudes to the provision of LGBT-related fiction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glish public libraries." <<http://library.ifla.org/1017/>> [cited 2015. 9. 20].
- Creelman, J.A.E. & Harris, R.M. 1990. "Coming out: The information needs of lesbians." *Collection Building*, 10 (3-4): 37-41. <<http://www.emeraldinsight.com/doi/abs/>>

- 10.1108/eb023281> [cited 2015. 9. 20].
- Elisabeth L. Chapman. 2014. "I've never thought about it": librarians' attitudes to the provision of LGBT-related fiction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glish public libraries." <<http://library.ifla.org/1017/>> [cited 2015. 9. 20].
- HERA(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2003. *Study Guide: Sexual Orientation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Library, Univ. of Minnesota. <www1.umn.edu/humants/edumat/studyguides/sexualorientation.html> [cited 2015. 7. 20].
- Howard, V. 2005. "Out of the Closer ... But Not on the Shelves?: an analysis of Canadian public libraries' holdings of gay-themed picture books." *Progressive Librarian*, 25(Summer): 62-75.
- IFLA, 2014. "Address the Silence: How Libraries can Serve Their LGBTQ Users", *80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Assembly. Libraries, Citizens, Societies: Confluence for Knowledge in Session 151 -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Questioning Users Special Interest Group*. <<http://library.ifla.org/view/conferences/2014/2014-08-19/377.html>> [cited 2015. 9. 20].
- IFLA, 2015. LGBTQ SIG. <<http://www.ifla.org/lgbtq>> [cited 2015. 9. 10].
- Itaborahy, L. P. 2014. State-sponsored Homophobia: A world survey of laws prohibiting same sex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https://en.wikipedia.org/wiki/LGBT_rights_in_Asia> [cited 2015. 8. 1].
- Johnson, M. 2007.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subject access: history and current practice*. MLS thesis, Queens College, Washington Univ. <<http://www.lib.washington.edu/msd/norestriction/b58062361.pdf>> [cited 2015. 8. 20].
- Johnson, M.(compiled). 2007. "GLBT Controlled Vocabularies and Classification Schemes." <<http://www.ala.org/glbtrt/popularresources/vocab>> [cited 2015. 9. 20].
- Joyce, S.L.P. & Schrader, A.M. 1997. "Hidden perceptions: Edmonton gay males and the Edmonton Public Library."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s* 1997, 22 (1), 19-37.
- Lang. 2009. "Library Rhetoric: The CLA Statement of Diversity and Inclusion and LGBTQ Advocacy." <<http://capping.slis.ualberta.ca/cap09/MoyraLang/>> [cited 2015. 8. 20].
- Mehra, B. et al. 2014. " 'Don't Say Gay' in the State of Tennessee: Libraries as Virtual Spaces of Resistance and Protectors of Human Rights of 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 and Queer (LGBTQ) People.” <<http://library.ifla.org/id/eprint/1011>> [cited 2015. 9. 20].
- Moriris, Martin & Roberto, K.R. 2014.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LGBTQ health professionals: New data to inform inclusive practice.” <<http://library.ifla.org/id/eprint/1032>> [cited 2015. 9. 10].
- Norman, M. 1999. “Out on loan: A survey of the use and information needs of users of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collection of Brighton and Hove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1(4): 188-196. <<http://lis.sagepub.com/content/31/4/188.short>> [cited 2015. 9. 20].
- Rosenzweig, M.C. 2000. “What Progressive Librarians Believ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 presentation to the Vienna International Library Conference of AKRIBIE at the Dr. Karl-Renner-Institut*. <<http://progressivelibrariansguild.org/content/Vienna2000.shtml>> [cited 2015. 9. 30].
- Rothbauer, P. 2004. “People Aren't Afraid Anymore, but it's Hard to Find Books: Reading Practices that Inform the Personal and Social Identities of Self-Identified Lesbian and Queer Young Women.”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 Library Sciences*, 28.(3): 53-74. <<http://www.academia.edu/917763/>> [cited 2015. 9. 10].
- Samek, T. 2005. “Ethical reflection on 21st century Information Work: and address to teachers and librarians,” *Progressive Librarian*, 25(Summer): 43-61.
- Silva Alentejo, Eduardo da. 2014. “Power and community: organizational and cultural LGBT responses against homophobia and promotion of inclusion values.” <<http://library.ifla.org/id/eprint/1010>> [cited 2015. 9. 30].
- Somorjai, Noémi. 2014. “Reducing the Suicide Risk of LGBTQ Library Users.” <<http://library.ifla.org/id/eprint/1031>> [cited 2015. 9. 10].
- Thomas, D.R. 2006.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7(2): 237-246.
- Thompson, K.J. 2012. “Where’s the ‘T’?: Improving Library Service to Community Members who are Transgender Identified,” *B Sides: University of Iowa’s Institutional Repository Journal*. <<http://ir.uiowa.edu/bsides>> [cited 2015. 8. 10].
- Tiki-Toki. 2007. “The LGBT Movements and Libraries.” <<http://www.tiki-toki.com/timeline/entry/141080/The-LGBT-movements-and-Libraries#vars!date=200>>

7-07-20_07:45:39!> [cited 2015. 9. 20].

Whitt, A.J. 1993. "The Information needs of lesbian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5(3): 275-288.

Wikipedia. 2015. "Libraries and the LGBTQ community." <https://en.wikipedia.org/wiki/Libraries_and_the_LGBTQ_community> [cited 2015. 8. 20].

Winkestein, Julie Ann. 2014. "Public Libraries: Creating Safe Spaces for Homeless LGBTQ Youth." <<http://library.ifla.org/id/eprint/1029>> [cited 2015. 8. 20].